

2026년 시험대비 손해사정사 2차 제3보험 (정한직) 기본서 정오표 _ 26.02.12

페이지	원본	수정사항
37p	<p>실종선고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생사불명자에 대해 법원이 사망으로 간주 • 일반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후 선고 가능 • 선고일이 보험기간 내면 사망 보험금 지급 	<p>실종선고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생사불명자에 대해 법원이 사망으로 간주 • 일반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후 선고 가능 • 실종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내면 사망보험금 지급
39p	<p>(5) 제3자에 의한 동시감정 보험금 지급 판정</p> <p>2017 기술문제</p> <p>장해분류표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장애 정도가 장해분류표에 규정된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도 미치지 못하면 장애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p>	<p>(5) 제3자에 의한 동시감정 보험금 지급 판정</p> <p>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 보험수익자와 보험자가 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제3자의 판단을 따른다.</p> <p>이 제3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 중에서 선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를 판정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p>
45p	<p>마. 표준약관별 기준 표에서,</p> <p>① 심신상실 등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재해 사망 →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지급</p>	<p>마. 표준약관별 기준 표에서,</p> <p>① 심신상실 등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재해 사망 →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지급</p>

<p>52p</p>	<p>8. 제10조(보험금 수령방법 변경)</p> <p>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p> <p>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p>	<p>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p>
<p>55p</p>		

<p>63p</p>	<p>*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 실손의료보험은 "⑩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뿔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추가 ※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p>	<p>*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삭제 단, 실손의료보험은 "⑩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뿔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추가 ※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p>
<p>100p</p>	<p>4. 제28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p> <p>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p>	<p>4. 제28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p> <p>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5.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p>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p>

117p	<p>9.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p> <p>보험자의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1인당 보장하는 금액의 최고한도는5000만원이다.</p>	<p>9.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p> <p>보험자의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1인당 보장하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1억원이다.(2025년 9월 1일)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최고 1억원 까지 추가 보호한다.(신설)</p>
118p	<p>의료비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급여)과 실손보험(비급여) 이종 구조 • 급여는 공단·환자 공동부담 • 비급여 중 임의항목은 실손보장 제외 	<p>의료비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이종구조 • 급여는 공단·환자 공동부담 • 임의 비급여는 실손보장 제외
	<p>2. 의료비 지불제도</p> <p>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진료비 항목을 말한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고가검사 비용 등 법령이 정한 항목들이 대표적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비 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p>	<p>2. 의료비 지불제도</p> <p>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진료비 항목을 말한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고가검사 비용 등 법령이 정한 항목들이 대표적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비 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삭제</p>
119p	<p>나. 포괄수가제 (Bundled Payment)</p> <p>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정체 수술, 편도선 수술, 맹장 수술 등 7가지 주요 질병군에 대해 포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p>	<p>나. 포괄수가제 (Bundled Payment)</p> <p>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 분만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수술 등 7가지 주요 질병군에 대해 포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p>

<p>206p</p>	<p>라. 장해보험금 지급 한도</p> <p>1) 동일한 사고: 동일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이 경우 가입금액 한도만큼 지급되면 계약은 소멸한다.</p> <p>2) 별개의 사고: 각각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장애는, 각 사고별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러 사고로 인한 장애 지급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며 계약은 유지된다.</p>	<p>라. 장해보험금 지급 한도</p> <p>1) 동일한 사고: 동일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이 경우 가입금액 한도만큼 지급되면 계약은 소멸한다. 삭제</p> <p>2) 별개의 사고: 각각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장애는, 각 사고별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러 사고로 인한 장애 지급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며 계약은 유지된다.</p>
<p>273p</p>	<p>라.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p> <p>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p> <p>1) 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폭처법」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p> <p>2)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p> <p>3)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p> <p>4)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 생긴 손해</p> <p>5) 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또는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p>	<p>라.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p> <p>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p> <p>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폭처법」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p> <p>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p> <p>3)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p> <p>4)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 생긴 손해</p> <p>5)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또는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p>

<p>274p</p>	<p>다. 보험금 지급 제외 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생긴 손해 2) 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4) 보험자가 원인이 불명확한 실종 및 행방불명이 된 경우 	<p>다. 보험금 지급 제외 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4) 피보험자가 원인이 불명확한 실종 및 행방불명이 된 경우 																																
<p>366p</p>	<p>⊙ 계약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293 683 1099 975"> <thead> <tr> <th>보험계약</th> <th>보험기간</th> <th>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th> <th>보장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험1</td> <td>2019.7.1.~2029.7.1.</td> <td>홍길동</td> <td>암진단 : 1,000원 암입원 : (1일당) 10만원</td> </tr> <tr> <td>보험2</td> <td>2019.7.1.~2029.7.1.</td> <td>홍길동</td> <td>상해사망 : 2,000만원 상해입원 : (1일당) 5만원</td> </tr> <tr> <td>보험3</td> <td>2020.8.7.~2030.8.7.</td> <td>홍길동</td> <td>암진단 : 2,000만원 암입원 : (1일당) 만원</td> </tr> </tbody> </table>	보험계약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장내용	보험1	2019.7.1.~2029.7.1.	홍길동	암진단 : 1,000원 암입원 : (1일당) 10만원	보험2	2019.7.1.~2029.7.1.	홍길동	상해사망 : 2,000만원 상해입원 : (1일당) 5만원	보험3	2020.8.7.~2030.8.7.	홍길동	암진단 : 2,000만원 암입원 : (1일당) 만원	<p>⊙ 계약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1178 683 2002 975"> <thead> <tr> <th>보험계약</th> <th>보험기간</th> <th>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th> <th>보장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험1</td> <td>2019.7.1.~2029.7.1.</td> <td>홍길동</td> <td>암진단 : 1,000원 암입원 : (1일당) 10만원</td> </tr> <tr> <td>보험2</td> <td>2019.7.1.~2029.7.1.</td> <td>홍길동</td> <td>상해사망 : 2,000만원 상해입원 : (1일당) 5만원</td> </tr> <tr> <td>보험3</td> <td>2020.8.7.~2030.8.7.</td> <td>홍길동</td> <td>암진단 : 2,000만원 암입원 : (1일당) 5만원</td> </tr> </tbody> </table>	보험계약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장내용	보험1	2019.7.1.~2029.7.1.	홍길동	암진단 : 1,000원 암입원 : (1일당) 10만원	보험2	2019.7.1.~2029.7.1.	홍길동	상해사망 : 2,000만원 상해입원 : (1일당) 5만원	보험3	2020.8.7.~2030.8.7.	홍길동	암진단 : 2,000만원 암입원 : (1일당) 5만원
보험계약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장내용																															
보험1	2019.7.1.~2029.7.1.	홍길동	암진단 : 1,000원 암입원 : (1일당) 10만원																															
보험2	2019.7.1.~2029.7.1.	홍길동	상해사망 : 2,000만원 상해입원 : (1일당) 5만원																															
보험3	2020.8.7.~2030.8.7.	홍길동	암진단 : 2,000만원 암입원 : (1일당) 만원																															
보험계약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장내용																															
보험1	2019.7.1.~2029.7.1.	홍길동	암진단 : 1,000원 암입원 : (1일당) 10만원																															
보험2	2019.7.1.~2029.7.1.	홍길동	상해사망 : 2,000만원 상해입원 : (1일당) 5만원																															
보험3	2020.8.7.~2030.8.7.	홍길동	암진단 : 2,000만원 암입원 : (1일당) 5만원																															
<p>369p</p>	<p>⊙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p>	<p>⊙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삭제</p>																																

<p>378p</p>	<p>⊙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p>	<p>⊙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삭제</p>
<p>380p</p>	<p>⊙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p>	<p>⊙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삭제</p>